



제43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예산안 심사제도 개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11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미애 · 송석준 · 김은혜 · 최수진 · 강명구 · 성일종
김위상 · 김민전 · 김기현 · 유용원 · 한기호 · 박성훈
조정훈 의원 (13인)

2. 제 안 일 : 2026. 2. 26.

3. 회 부 일 : 2026. 2. 27.

※ 의안번호 : 171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절차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그 내부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현행 예산 심사가 개별 사업이나 증감 항목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거시적인 재정 운용 관점에서의 심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지적되었음.

이에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 10항 및 제84조).

II. 검토의견

1. 예결특위 내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외 협의체의 예산안 등 비공개 심사·결정 금지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예산안 등을 비공개로 심사·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0항 신설).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7조(소위원회) ① ~ ⑨ (생략) <신설>	제57조(소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예산안 등을 비공개로 심사·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 제57조¹⁾에 따르면,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거나

- 1)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한다. (단서 생략)
- ⑦ (생략)
-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 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소위원회 외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개의 분과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여러 개의 분과 위원회로 나눌 수 있음.

그런데 예결특위는 관례적으로 소위원회 외에 ‘소소위원회’를 활용하여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원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예결특위 간사와 기획예산처 관계자 등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고 비공개로 논의가 이루어짐. 이로 인해 예산안 심의가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예결특위에서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예산안 등을 비공개로 심사·결정하는 것을 금지하여 국회 내 공식 회의체에서 예산안 등을 공개적으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²⁾ 예산안 전부를 심의하여야 하는 예결특위가 소소위원회를 통해 예산안 심사의 고착을 해소하고 쟁점

위원회로 나눌 수 있다.

2)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예결특위에 예산안이 회부·상정되는 시기는 대략 11월 초임. 예결특위는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가 가능한 기간은 한 달이 되지 않는 상황임.

구 분	정부 예산안 제출일	예산안 예결특위 회부·상정일	예결특위 예산안 처리일
26년도 예산안	2025. 9. 3.	2025. 11. 6.	-
25년도 예산안	2024. 9. 2.	2024. 11. 7.	2024. 11. 29.
24년도 예산안	2023. 9. 1.	2023. 11. 3.	-
23년도 예산안	2022. 9. 2.	2022. 11. 7.	-
22년도 예산안	2021. 9. 3.	2021. 11. 5.	-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에 관한 여·야의 정치적 타협 및 협상을 이끌어내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으므로³⁾, 개정안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 국회운영의 효율성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 개정안은 예결특위가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외 협의체에서 예산안 ‘등’을 비공개로 심사·결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금지하고자 하는 대상행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문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⁴⁾

개정안은 현재 예결특위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소위원회’를 상정하여 ‘협의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소소위원회’는 비공식적, 사실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할 뿐 구체적·물리적인 조직 내지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배득중, 「한국 국회의 예산심의제도 개선방안」, 『정부회계연구』, 2016. 12, p.184.,

박현석,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예산춘추』, 2019. 2.

4) 현행법 제45조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공개 심사·결정을 금지하는 대상이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전부인지 아니면 이 중 일부인지를 법문에 명확히 열거하는 것이 집행상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회법」 제45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2. 하향식 예산안 심사방식으로 전환

개정안은 현행 2단계 상향식(Bottom-up) 예산안 심사방식을 3단계 상향식(Top-down) 예산안 심사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3일)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고,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를 준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11월 22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며,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8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표-2] 현행 및 개정안에 따른 예산안 심사방식 변화

현행법 (2단계 상향식)	개정안 (3단계 하향식)
①상임위 예비심사 ↓ ②예결특위 심사	①예결특위 부처별 지출한도 심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 ②상임위 심사 : 부처별 지출한도 준수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 ③예결특위 심사 : 상임위 부처별 지출한도 준수여부 등 검토

[표-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

현행	개정안
<u>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u> ② <u>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신 설> <신 설> ⑥ <u>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u>	<u>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대해서-----</u> -----. ② <u>의장은 예산안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u> ③ <u>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u> ④ <u>의장은 예산안에 제3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u> ⑤ <u>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u>

현행	개정안
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u>분과위원회</u>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으로 그 기간을 정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생략)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을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예산안 심사는----- ----- ----- -소위원회----- -----, ----- ----- ----- ----- -----.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가 제1항에 따른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 ----- ----- -----, - ----- ----- ----- ----- -----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 설>	⑨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신 설>	⑩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 설>	⑪ 의장은 결산에 제10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⑫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종합정책질의를 할 때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대표질의 또는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할당 등의 방법

현행	개정안
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일 전달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 ----- -----. ④ (현행과 같음)

헌법은 정부에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으며,⁵⁾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는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부처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② 예비심사를 거친 각 부처의 예산안은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전체적인 심사를 거치게 되는 2단계 ‘상향식’ 심사과정임.

개정안은 현행 예산안 심의절차를 3단계 ‘하향식’ 심사절차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① 예결특위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고,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를 준수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11월 22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하며, ③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부처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함.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하향식 예산안 심사제도의 도입은 제21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국회 예산·결산 심사기능 강

5)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화에 관한 공청회(2022. 9. 15.)에서 논의된 적 있고,⁶⁾ 제19대국회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건의한 정책 사항 중 하나임.⁷⁾

국회가 짧은 심사기간으로 인해 예산안을 세부사업 위주의 증·감액 등 미시적 심사에 치중함에 따라 거시적인 자원배분 측면에서의 재정통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예결특위의 전략적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가 거시적 관점에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됨.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은 상임위원회의 미시적 심사와 예결특위의 거시적·종합적 심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예결특위가 재정총량이나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보다는 단년도 세부사업의 증감액 조정에 집중하여 예산안을 체계적으로 심사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⁸⁾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우선 예결특위에서 부처별 지출한도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국회가 재정총량과 분야별 재

6) 공청회에서 예산안 하향식 심사방식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하향식)과 심사(상향식) 과정의 비정합성과 예결위·상임위 역할 중복 문제 극복을 위해 하향식 예산심사제도 도입 필요하다는 의견과 하향식 예산안 심사방식을 채택할 경우 예결위와 상임위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되었음.

7) 「예산·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정책 건의 중

바. 상임위·예결위 간 심사방식

현행 2단계의 상향식 심사방식(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을 3단계의 하향식 심사방식(예산결산위원회의 총량심사 → 상임위원회의 심사 →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조정)으로 전환한다.

8) 류철,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산춘추』, 2021. 2, p.22-23.

원배분 등을 논의하여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예산안에 대한 거시적·종합적 심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둘째, 예결특위와 상임위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상임위의 증액 심사 경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현재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 모두 개별사업을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예결특위가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도록 한 현행법⁹⁾과 달리 실제 심사 시에는 상임위의 의결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특히 감액 의결사항만 반영하는 경향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예산 증액에 집중하는 온정주의적 행태가 나타남.¹⁰⁾¹¹⁾

이로 인해 현재의 예산안 심사과정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

9)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10)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4. 6, p.15-16.

11) 2021년~2025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총지출 증액 규모가 감액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예비심사 결과		
		증액	감액	증감
2021	총 수입	492	△587,799	△587,307
	총 지출	12,171,075	△906,607	11,264,468
2022	총 수입	159	△1,311	△1,152
	총 지출	13,484,185	△1,810,222	11,673,963
2023	총 수입	600	△228,330	△227,730
	총 지출	24,371,584	△1,796,126	22,575,458
2024	총 수입	250,212	△336,486	△86,274
	총 지출	17,018,227	△771,368	16,246,859
2025	총 수입	50,837	△376,004	△325,167
	총 지출	18,590,289	△1,134,391	17,455,898

주) 정보위원회 제외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심사백서, 2025. 3.

되고 있으므로,¹²⁾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는 부처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므로 상임위의 예산 증액 관행을 완화하여 재정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고, 상임위와 예결특위 간 명확한 역할 구분을 통해 예산안 심사의 연계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¹³⁾

다만, 부처별 지출한도 조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용함에 따라 타협과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려운 점, 정부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첨부서류¹⁴⁾를 국회에 제출하나 대략적인

12) 상임위 예비심사의 의의는 예결위 심사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예결위에서 상임위 심사 내용이 빈번히 수정되니 상임위 예비심사는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게 된다는 견해가 있음(하중범, 「국회의 예·결산심의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5. 8.).

13)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에 주어지는 시간은 1주일 남짓에 불과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예결특위는 부처별 지출한도 결정 및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검토(부처별 지출한도 준수 여부 등)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14)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지출 및 이가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분야별 재원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재원 투입량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 달이라는 심사기한 내에 부처별 지출한도 심사를 완료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하향식 예산안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2건의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69호)」¹⁵⁾의 경우 예산결산위원회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안)」 제83조의3(재정총량심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다음연도 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및 기금별 지출한도에 대해 보고받은 뒤,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를 한다.
- ② 국회의장은 예산결산위원회가 보고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재정총량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 ③ 정부로 이송된 국회의 재정총량심사결과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과 함께 논의

가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다음연도 재정규모,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 중앙관서별·기금별 지출한도를 보고받아 재정총량, 위원회 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사한 개정안들의 효과 및 현실성 등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표-4] 유사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맹성규의원안 (1869)	- 사전예산제도 도입 : (기획예산처) 다음연도 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중앙관서별 및 기금별 지출한도 보고 → (예결위) 재정총량심사 → (의장) 본회의 부의·의결 및 정부 송부 → (정부)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과 재정총량심사결과 논의 - 3단계 하향식 예산안 심사제도 도입 : (예결위) 재정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포함한 재정총량심사 → (예산안 국회 제출) → (상임위) 재정총량심사결과를 준수하여 예비심사 → (예결위) 종합심사(재정총량심사결과 미준수 시 한도 내 조정) -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예결위)로 전환 등
민형배의원안 (2902)	- 3단계 하향식 예산안 심사제도 도입 : (예결특위) 예산안·결산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재정심사지침 의결 → 재정심사지침 본회의 부의·의결 및 이를 첨부하여 예산안·결산 각 상임위 회부 → (상임위) 재정심사지침에 따라 회부일부터 30일 이내 심사 → (예결특위) 종합조정(재정심사지침에 어긋나는 범위에 한정)

된다.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재정총량심사결과를 준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재정총량심사에서 설정한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하여야 하고, 각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심사 설정 한도 내로 조정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의 도입¹⁶⁾ 이후 매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처리해온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에만 부처별 지출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의 실익이 일부 제한되는 측면도 있음.

[표-5] 예산안 자동부의제 도입 이후 국회 예산안 처리 일자

구 분		예결특위 상정일	예결특위 의결일	본회의 의결일	비 고
20대 국회	'17년 예산안	'16. 10. 26.	-	'16. 12. 3.	본회의 수정안 처리
	'18년 예산안	'17. 11. 6.	-	'17. 12. 6.	
	'19년 예산안	'18. 11. 5.	-	'18. 12. 8.	
	'20년 예산안	'19. 10. 28.	-	'19. 12. 10.	
21대 국회	'21년 예산안	'20. 11. 4.	-	'20. 12. 2.	
	'22년 예산안	'21. 11. 5.	-	'21. 12. 3.	
	'23년 예산안	'22. 11. 7.	-	'22. 12. 24.	
	'24년 예산안	'23. 11. 3.	-	'23. 12. 21.	
22대 국회	'25년 예산안	'24. 11. 7.	'24. 11. 29.	'24. 12. 10.	
	'26년 예산안	'25. 11. 6.	-	'25. 12. 2.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한편,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볼 때, 개정안은 결산 심사 절차를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위원회의 결산 심사결과는 예결특위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안 제84조제13항의 인용조문에 같은 조 제11항을 추가¹⁷⁾함으로써 현행과 같이 정보위원회 소관 업무

16)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은 예산

의 기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해외 주요국 의회 중 하향식 예산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는 미국, 스웨덴 및 프랑스가 있음.¹⁸⁾

문 의 처
02)6788-5015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부처별 지출한도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④ 의장은 예산안에 제3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⑩ 의장은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⑪ 의장은 결산에 제10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⑬ 정보위원회는 제1항·제4항·제9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18) 「2020 주요국의 재정제도」, 국회예산정책처, 2020.6.